



##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281호, 2018. 11. 13.,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대학이나 기관을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추가하여 국민의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이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학점인정 신청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27.] [대통령령 제29284호, 2018. 11. 13.,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추가하고 화장시설, 공동묘지 및 봉안시설을 장사시설로 통합하는 등 기반시설의 유형을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련된 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14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 및 법률 제15401호, 2018. 2. 21. 공포, 2019. 2. 2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유형을 정비하고, 기초

조사정보체계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지정될 당시 이미 해당 지역에 준공되었던 공장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하면 당초 2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규정된 해당 지역의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장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정한 특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6.] [대통령령 제29274호, 2018. 11. 6.,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협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문제 완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사업준비특별기

금에 1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신규로 출연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 2018. 11. 6.] [대통령령 제29275호, 2018. 11. 6.,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시설·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校舍) 또는 교지(校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시설·건축물을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건축물을 그 사립유치원의 교지에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1. 6.] [대통령령 제29272호, 2018. 11. 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  
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매  
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34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1. 5.] [국토교통부령 제  
552호, 2018. 11. 5., 일부개정]**

**[시행 2018. 11. 5.] [해양수산부령 제  
309호, 2018. 11. 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  
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신청인이 주민등록  
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신청  
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명서의 제시로 같음하도록 함으로써 신청  
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위험물질 운  
송차량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과 운  
행중지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1. 1.] [총리령 제1495호,  
2018. 11. 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  
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  
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  
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법  
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 11. 1. 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의 서  
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시행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1. 1.] [총리령 제1497호,  
2018. 11. 1., 전부개정]**

**1. 개정이유**

회계법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작성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할 항목으로 소속  
공인회계사 중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연차별 감사투입 시간, 소속 이사  
의 보수 등이 추가되는 등의 내용으로 「주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공  
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회계법

인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할 항목을 구체화하고, 회계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안 제5조)

회계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사업부문별 매출액, 인원 및 보수 등 회계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수시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안 제6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회계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59호, 2018. 10. 30.,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타인의 서면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등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4969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등이 적혀 있고, 전자서명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작성되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시 타인의 동의를 나타내는 서면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로 정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